

<p>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·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</li> <li>2.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</li> <li>3.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</li> </ol> <p>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</li> <li>2.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원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</li> <li>3.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</li> <li>4.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</li> <li>5.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</li> </ol> <p>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2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</li> <li>2.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</li> <li>3.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</li> <li>4.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</li> </ol>	<p>제50조중 “사업소장·실장·국장 등”을 “시설 관리사 등”으로 한다.</p> <p>제51조에 본문 “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”를 신설하고, 같은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조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.</p> <p>3. 3급 관사: 시설관리사·기타 관사 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</li> <li>2.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</li> <li>3. 시설의 보호·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.</p> <p>③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)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④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제6항, 제8항,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⑤(매각대금의 감면)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</p> <p>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6조·제57조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·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액</li> <li>2.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</li> </ol>
---	--

<p>제 3 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(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지정·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한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 등 정비</li> <li>2. 영 제2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(서울특별시가 소유 또는 지정·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)의 안전진단</li> <li>3.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</li> <li>4.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</li> <li>5.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</li> <li>6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</li> <li>나.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</li> </ol> </li> </ol> <p>제 4 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(이하 "시금고"라 한다)에 예탁·관리한다.</p> <p>③영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용자의 절차·방법·조건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(기금운용관 등)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 기금담당관(이하 "기금담당사무관"이라 한다)이 된다.</p> <p>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병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 6 조(회계 관리) 기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·운용되며,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 7 조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며, 위원은 재난관리 또는 기금의 운용·관리와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 <p>제 8 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 9 조(회의)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</p> <p>②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</p> <p>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</p>
--

<p>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,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특별공적"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것을 말한다.</li> <li>2. "공무원등"이라 함은 시와 소속행정기관·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또는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 3조(지급대상) 시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이를 신고한 자로서 시의 행정발전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품수수 행위</li> <li>2.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</li> </ol> <p>제 4조(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)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시민·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상금 지급 대상·시기·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특별공적에의 해당여부</li> <li>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 5조(지급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,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</p>	<p>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 6조(보상금 지급 제외)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부조리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7조(환수)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의한 보상금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&lt;별표&gt; <u>부조리신고대상별 보상금지급기준(제5조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구분 번호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지 급 기 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보상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00만 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2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30만 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5px;">10만 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제4조제1항중 "7인의"를 "7인이내의"로 한다.</li> <li>○안 제4조제2항중 "공보관·시의원"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"공보관"으로 한다.</li> <li>○안 제10조제3항중 "연임할 수 있으며"를</li> </ul>	구분 번호	지 급 기 준	보상금	1	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	100만 원	2	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	30만 원	3	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	10만 원
구분 번호	지 급 기 준	보상금											
1	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하여 부조리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	100만 원											
2	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비리가 시정되는 계기가 된 경우	30만 원											
3	기타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	10만 원											